학생회회칙

(제 정: 1998.4.11.)(1차 개정: 2000.4.16.)(2차 개정: 2006.8.28.)(3차 개정: 2011.2.14.)

(4차 개정: 2011.4.11)(5차 개정: 2013.3.4.)(6차 개정: 2016.10.19.)(7차 개정: 2017.10.30.)

(8차 개정: 2018.9.11)(9차 개정: 2020.10.30.)(10차 개정: 2023.6.12.)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라대학교 학생총회(이하"본회")라 칭한다. (개정 2023.6.12.)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해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학문탐구와 창조적 비판능력을 길러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하고 나 아가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며 정의로운 민주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본회는 한라대학교 안에 둔다.

제4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 중인 학사과정의 모든 학생으로 한다.(단, 휴학 및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회의 각종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2. 본회의 회원은 회 조직 내에서 사업 활동과 관련된 제반 의사결정에 투표할 권리를 갖는다.
- 3. 본회의 회원은 회 조직 체계 내에서 본회의 사업 전반에 대한 투표권을 갖는다.

제6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 1.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 2. 본회의 회원은 본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따를 의무를 지닌다.
- 3. 본회의 회원은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징계를 감수할 의무를 지닌다.
- 4.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사업계획, 회비의 수입과 지출 등 본 회의 운영 전반에 걸친 알 권리를 갖는다.
- 5. 학생회비를 납부 할 의무를 지닌다.

제7조(기구) 본회에는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집행부, 대의원총회, 총대의원회, 중앙위원회, 총동아리연합회, 복지위원회, 응원단을 둔다. (개정 2020.10.30., 2023.6.12.)

제8조(임기) 선거에 의한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제9조(학교당국과의 협의) 본회의 의장은 본 회의 목적과 회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 당국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정 2023.6.12.)

제2장 학생총회

제10조(구성) 본회는 본 회의 재적회원 전체로 한다.(단, 제4조에 의거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는 제외한다.)(개정 2023.6.12.)

제11조(기능) 본회는 학생 전체의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토의한다. (개정 2023.6.12.)

- 1.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재신임 및 해임 등의 사항에 대하여 재신임 투표권 및 해임 투표 권을 가질 수 있다.(단, 학생총회 5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생회장단 재신임 및 해임에 대하여 대의원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2. 본회의 모든 회원에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제12조(의장) 총회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단, 총학생회장이 궐위 중에는 부총학생회장이 대행하며, 총학생회장, 부회장 해임을 위한 안건 처리 시에는 총대의원회 의장이 의장직을 수행하게 한다.

제 13조 (소집)

- 1. 대의원총회, 총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회원 20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가 있을 시에 총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에는 총학생회장이 의장 직권으로 소집할 수도 있다.)
- 2. 본회의 소집은 소집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2.)

제3장 운영위원회

제14조(지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 한다.)는 본 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제15조(구성) 운영위는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총동아리연합회 6인으로 구성한다.

제16조(의장) 운영위의 의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17조(업무 및 권한) 운영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1. 본회의 제반 사업을 계획·심의·조정한다.
- 2. 본회의 회비 책정 및 행사별 예산·결산을 총대의원회에 상정한다.
- 3.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소집) 운영위의 회의 소집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눈다.

- 1. 정기회의는 매월 1회로 하며 시기는 운영위에서 정한다.
- 2. 임시회의는 총학생회장의 요구 또는 운영위원 1/3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제19조(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4장 총학생회

제1절 총학생회 회장단

제20조(지위 및 임기) 총학생회 회장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위 및 임기를 가진다.

- 1. 총학생회장단은 본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의장, 운영위원회의장, 집행부의 장이 된다.
- 2. 총학생회 회장단은 불신임의결 및 탄핵의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당하게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 3.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 궐위 시 그 직을 승계한다.
- 4. 총학생회 정·부회장단의 임기는 선거 실시 차기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21조(업무 및 권한) 총학생회장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1. 총학생회장단은 활동에 있어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시행한다.
- 2. 총학생회장단은 집행부를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3.6.12.)
- 3. 본회의 총회, 운영위, 집행부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관한다.
- 4. 총학생회장은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을 학교 당국에 제출할 수 있다.
- 5. 총학생회장은 총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하여야 한다.
- 6. 본회의 회칙 개정에 대하여 총대의원회에 발의할 수 있다.
- 7. 본회의 전체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하여 총대의원회에 상정한다.
- 8. 총대의원회에서 승인된 예산·결산 안을 7일 이내에 공고한다.
- 9. 대내외 활동에 있어서 대표권을 갖는다.
- 10.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생총회를 소집하여 주재할 수 있다.
- 11. 기타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제2절 집행부

제22조(지위) 집행부는 본 회의 최고 집행 기구이다.

제23조(구성) 집행부는 국장과 부장 4국 5부로 구성한다.(단, 필요에 따라서 차장단 및 수습 부원을 둘 수 있다.)

제24조(업무 및 권한)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 1. 총학생회장단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 2. 본회의 사업계획, 예산편성,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대의원회에 제출한다.

제25조(집행부장)

- 1. 집행부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부집행부장은 부총학생회장으로 한다.
- 2. 집행부장은 집행부의 회의 및 집행 업무 등을 총괄하며, 집행부장의 궐위 시에는 부집행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운영) 집행부는 총학생회장단 통제하에 제반 업무를 수행, 운영한다.

제27조(조직) 집행부의 제반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1. 기획국 : 본회의 사업 전반을 기획, 조정하고 행사를 추진한다.

- 2. 정책국 : 본회의 정책 사업을 기획, 조정하며 각종 회의를 주관한다.
- 3. 사무국 : 본회의 서무, 회계 및 일절의 사무를 관장한다.
- 4. 복지국 :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홍보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 5. 홍보부 : 본회의 대·내외적인 홍보활동을 전담한다. (개정 2020.10.30.)
- 6. 정책부 : 본회의 올바른 방향 설정과 학생의 권리를 찾는다.
- 7. 기획부 : 모든 행사를 계획, 추진하여 회원들의 입장에서 만족도를 높인다.
- 8. 사무부 : 본회의 올바른 예산집행 및 사무를 전담한다.
- 9. 문화부 : 본회의 모든 행사와 사업에 대한 문화와 교육 및 예술에 관한 업무를 전담한다. (개정 2020.10.30.)

제5장 대의원총회

제28조(지위) 대의원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29조(구성) 대의원 전원으로 총대의원회 및 학부(과) 대의원장 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직은 총대의원회 의장이 겸임한다.

제30조(소집) 대의원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1. 정기총회는 3월과 9월에 의장이 소집하되 4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단, 긴급을 요할 때는 의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2. 임시총회는 재적대의원 1/6이상이 요구가 있거나 중앙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 의장이 소집하고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집한다.(단, 긴급을 요할 때는 의장단과 협의하여 개최 할 수 있다.)

제31조(의결)

- 1.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단, 재투표시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의 집권으로 결정한다.)
- 2. 대의원총회에서 상정된 안건은 2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제32조(업무 및 권한) 대의원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1. 총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권을 갖는다.
- 2. 학생본분에 어긋난 부당한 행위 또는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총학생회장단 탄핵 의결권을 가지며 탄핵의 의결권은 재적대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탄핵이 가결되면 학생생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총회 20% 이상의 투표에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한다. 학생총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회장단으로서의 모든 권한은 박탈하며 남은 잔임 기간은 보궐선거 조항에 명시된 잔임 기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대책을 수립한다.

- 3. 총대의원회 및 중앙위원회의 업무 중 특별하게 사안을 결정하여야 하는 안건에 대하여 의 장이 이를 상정하여 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다.
- 4. 학생총회 및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권을 갖는다.

제6장 총대의원회

제1절 의장단 및 집행부

제33조(구성)

- 1. 총대의원회는 의장과 부의장 4국 5부로 구성한다.
- 2. 집행업무 수행의 원활함을 위해 총대의원회 집행부를 의장단이 임명한다.
- 3. 총대의원회는 집행업무 수행의 원활함을 위해 차장과 수습부원을 둘 수 있다.

제34조(의장, 부의장)

- 1. 총대의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대의원총회 전원의 직접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단, 세부 사항은 당해 연도 선거시행세칙에 준한다.)
- 2. 총대의원회 의장단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대의원회의장단, 대의원총회의장단, 중앙위원회의 장단이 된다.(단,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단의 궐위 및 학생회 재신임, 해임, 탄핵 의결 시 총대의원회 의장이 학생총회의 의장이 된다.)
- 3. 총대의원회 의장은 총대의원회의 운영 및 회의를 관장한다.
- 4. 총대의원회 부의장은 의장 유고 시 그 업무 및 권한을 대행한다.

제35조(업무 및 권한) 총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1. 회칙 개정 발의 및 의결권
- 2. 학생총회 및 대의원총회 소집 요구권
- 3. 집행부 국장 및 부장 이하 간부의 임명 동의권
- 4. 운영위원회 출석 요구권
- 5. 집행부 국장 및 부장 이하 간부의 출석 요구권 및 해임 의결권
- 6. 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신문방송국 등 회비책정 및 예산 및 결산 심의·승인권
- 7. 업무, 회계 및 기타 사업에 관한 심사
- 8. 감사결과 부정 발견 시 그 해당 책임자에 대한 학교당국의 징계 요구권
- 9. 총대의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2주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 10. 정기(임시)감사권 및 특별감사권

- 11.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 12. 본 회의 예산 및 결산을 공고한다.
- 13. 기타 총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관한 심의 의결권

제36조(운영)

-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세칙(감사, 예·결산)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 2. 기타 감사 및 예·결산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본 회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세칙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제2절 중앙위원회

제37조(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는 총대의원회 상설기구이다.

- 1. 중앙위원회의 구성은 학부(과) 대의원장 중 호선으로 선출된 4인과 총대의원회 의장단, 국 장단으로 구성한다.
- 2. 중앙위원회는 중앙위원 2/3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중앙위원회는 대의원 총회 안건 상정 이전에 회의를 소집하여 사전 심의하고 회의 결과에 따라 대의원 총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 4. 학부(과)대의원에서 특별하게 안건 심의 회의를 요구할 경우 총대의원회를 통해 중앙위원 회 소집을 요청 할 수 있다.
- 5.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대의원회 의장이 겸임한다.
- 6. 감사결과 부정 발견 시 징계에 대한 의결권과 학교 당국의 징계요구권을 갖는다.
- 7. 대의원총회 소집 요구권을 갖는다.

제7장 학부(과)대의원장

제38조(구성 및 업무)

- 1. 학부(과) 대의원장은 학부(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개정 2023.6.12.)
- 2. 학부(과) 대의원장은 학부(과) 학생회의 감사권과 예결산 편성권을 가지고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학부(과) 대의원장은 총대의원회의 협의기구로 감사분과 위원과 예결산분과 위원으로 업무를 분담한다.

- 4. 감사분과 위원의 장은 총대의원회 감사국장이 겸임하고 예결산분과 위원의 장은 예결산 국장이 겸임한다.
- 5. 학부(과) 학생회의 감사결과 부정 발견 시 징계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제8장 총동아리연합회

제39조(지위) 총동아리연합회는 한라대학교에 인준된 모든 동아리의 최고 대표 기구이다.

제40조(구성)

- 1. 총동아리연합회는 회장과 부회장. 4국 5부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30.)
- 2. 각 국은 집행 업무 수행의 원활함을 위해 차장과 수습부원을 둘 수 있다.

제41조(업무 및 권한) 총동아리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1. 동아리 활동에 관한 기획, 조정 및 지원 등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2. 동아리 관련 사업 계획서와 예·결산서를 수립하여 총대의원회에 제출한다.
- 3. 총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최종 예·결산서를 각 동아리에 공고하여야 한다.
- 4. 기타 총동아리연합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제42조(회장, 부회장)

- 1. 총동아리연합회의 회장은 총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한다.
- 2. 총동아리연합회의 회장 궐위 시에는 부회장이 집무를 대행한다.

제43조(운영) 본 회칙 및 동아리등록 및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본 회칙 및 운영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세칙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9장 복지위원회

제44조(지위) 복지위원회는 학생의 권익증진을 위해 설치된 기구이다.

제45조(구성) 총학생회장단 및 학부(과) 학회장으로 구성한다.

제46조(업무 및 권한) 복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1.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 행사 및 학술활동을 할 수 있다.
- 2. 복지위원회는 사업 계획서 및 예·결산서, 행사 등을 총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총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최종 예·결산서를 소속 학부(과) 학생회에 공고하여야 한다.
- 4. 복지증진의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 학교에 건의 할 수 있다.
- 5. 기타 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제47조(위원장)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수행하고 회장 궐위 시에는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제48조(기타)

1. 복지위원회는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 회칙과 조직을 가질 수 있다.

제10장 응원단

제49조(명칭) 한라대학교 必(FEEL) 응원단(이하 "응원단"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 2023.6.12.) 제50조(목적) 대외적으로 모교를 알리고, 대내적으로는 학우들의 단결을 꾀하여 애교심을 고취 시키고, 응원을 본교에 정착화 시킴으로서 학우들 사이의 단결심, 봉사정신, 희생정신 그리고 애교심을 심어준다. 응원의 보급으로 학우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대학 응원문화의 형성 및 보급에 기여한다. 또한 대학 문화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며, 본교 축구부의 승리를 이끌기위한 응원을 대표한다. (개정 2023.6.12.)

제51조(설치) 응원단 활동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중앙자치기구와 상호 협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6.12.)

제52조(운영)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응원단 세칙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6.12.)

제11장 재 정

제53조(재정)

- 1. 본 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보조금 그 외 기타수익금으로 한다.
- 2. 본 회의 재정은 본 회의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4조(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며, 집행 실적 공 개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학생회비 운영 세칙에 따른다. (개정 2023.6.12.)

제55조(학생회비)

- 1. 본 회의 학생회비에 대한 징수 및 관리에 대해 학생처의 협조를 받는다.
- 2. 학생회비는 신입생 등록 시 4년간의 회비를 납부한다.

제56조(예산)

1. 본예산서는 본 회의 각 기구별 운영계획서을 토대로 항목별로 편성하여 총대의원회에 제출하며, 총대의원회에 심의, 조정, 의결을 받아 확정한다.

2. 기타 사업의 변경, 취소, 추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1항과 동일한 절차에 의거하여 추경 예산서를 편성할 수 있다.

제57조(예산집행)

- 1. 예산집행은 확정된 예산서에 의거하여 각 기구별로 집행하되, 일체의 집행 사항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계장부에 지출내역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2. 예산서의 확정 지연으로 본 회 또는 본 회의 회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필수 또는 당연 집행 사항에 한하여 총대의원회의 의결로 선 집행 할 수 있다.
- 3. 학생회비에 대한 집행은 총대의원회에서 통제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학생회비 운영 세칙에 따른다. (개정 2023.6.12.)

제58조(결산)

- 본 회의 각 기구는 결산서류 및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대의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 2. 총대의원회는 결산서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체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3. 총대의원회는 감사 결과에 의거하여 해당 기구에 대한 시정,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2장 선 거

제59조(원칙)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를 원칙으로 하고 천재지변과 사회재난 또는 오프라인 투표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 온라인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제60조(선거권) 선거권은 본회의 재학생으로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자로 한다.

제61조(피선거권) 학생회(의)장단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피선거권을 가진다.

- 1.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학생회 활동으로 인한 형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단, 징계는 상벌규정에 의거하여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 2. 본 회의 회원으로 후보등록 시작일 현재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현재 재학 중인 자.
- 3. 학업에 충실하고 학생자치활동에 열성을 가지며 행실이 바르고 본회를 대표할 수 있는 지 휘 통솔력을 겸비한 자로 한다.
- 4. 총학생회는 전체 재학생 중, 총대의원회는 총대의원회 또는 학부(과) 대의원장의 직을 2학 기 이상 유지자 중, 총동아리연합회는 총동아리연합회 또는 단위동아리 2학기 이상 가입을 유지한 자로 한다.

제62조(선거시기) 선거 시기는 11월중에 실시한다.(단, 2학기 중에 실시가 불가능 할 때에는 그

사유가 해제되는 최단 시일 내 실시한다.)(개정 2020.10.30.)

제63조(선거방법)

- 1. 2인 1조(정, 부)로 입후보하여야 한다.
- 2. 당선 유효 : 직접선거에 의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단독일 경우에는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 가. 총학생회장단: 전체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투표율 35% 이상)
 - 나. 총대의원회의장단: 대의원장, 총대의원회 소속 임원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투표율 50% 이상)
 - 다. 총동아리연합회장단: 동아리대표자 및 총동아리연합회 소속임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투표율 50% 이상)
- 3. 총학생회장단, 총대의원회의장단, 총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에서 어느 한 기구라도 기준 투표율 미달시 개표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3.6.12.]

제64조(선거임기)

- 1. 정・부회(의)장단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단, 동일 직에 출마하여 연임 할 수 없다.)
- 2. 정ㆍ부회(의)장 궐위 시 선출 전까지의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65조(선거비용)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회비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제66조(입후보자 등록) 회(의)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등록원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이 공고된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단, 총학생회장단은 선거권자 전체 재학생의 3%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1. 등록원서, 소견서
- 2. 선거권자 3%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총학생회장단만 적용) 단, 비대면 학사 운영인 경우에는 전체 학회장의 50% 이상 추천을 받는다.(개정 2020.10.30.)
- 3. 학과(부)장, 학장 추천서
- 4. 참관인 명단
- 5. 출마소견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 6. 기타 선거시행세칙에 의거 구비서류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제67조(선거운동)

- 1. 선거운동은 해당 입후보자의 등록을 필한 후 선관위에서 적격심사 종료 후 특정기간부터 행할 수 있다.
- 2. 선거운동 비용은 입후보자가 일체 부담하며, 선관위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 선관위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3. 기타 선거운동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68조(투표 및 개표)

- 1. 투표용지 및 선거인명부 등 선거에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작성하며 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와 대조 후 기표용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는다.(단, 신분증은 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으로 제한한다.)
- 2. 투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단, 사고가 발생되었거나 연장을 필요로 할 경우 선관위에서 투표시간을 조정하여 연장 투표를 시행 할 수 있다.)
- 3. 투표구 설치 및 방법(장소 등)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르며, 투표소 및 개표소 내에는 위원회 위원 과 참관인 이외에는 출입을 금한다.
- 4. 온라인 투표시 세부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20.10.30.)

제69조(당선인)

- 1. 선관위는 최고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학생생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인준을 받아 이를 공고한다.
- 2.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학교성적 및 연장 순으로 결정한다.

제70조(징계) 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선거운동 정지 또는 피선거권을 박탈, 경고, 주의조치하거나 당선무효 및 징계를 학교 측에 요청 할 수 있으 며 유권자의 경우 선거권 박탈 및 학교 측에 징계 요청 등을 조치 할 수 있다.(주의 2회는 경고 1 회를, 경고 3회는 박탈 및 당선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 1.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양식을 부당하게 작성한 자.
- 2. 선관위원, 입후보자 및 유권자에 대하여 폭행, 폭언, 협박, 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
- 3. 선거일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강제투표, 문자 메시지 배포, 이메일 배포 등 부정한 선거운동을 고의로 한 자.(입후보자 및 유권자 포함)
- 4.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제공한 자.
- 5. 선관위에서 지정한 선거구역 이외에서 선거운동을 한 자.
- 6.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홍보물 및 선거방법 등을 부당하게 어긴 자.
- 7. 기타 선관위원회에서 규정하는 선거시행세칙 등에 따르지 않는 자.
- 8.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자.
- 9. 기타 이외의 선거운동 등에서 부당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제71조(선거시행세칙) 기타 선거관련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본 회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시행세칙을 수립하여 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공명정대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13장 선거무효 및 재선거

제72조(선거무효) 선거에 부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출마자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을 선거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소송이 제 기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선거시행세칙 위반 여부를 즉시 심의하고 재적 인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전에는 입후보 자동취소와 당선 후라도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가 된다.(단, 출마자도 위 사항에 포함한다.)

제73조(재선거)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7일 이내에 재선거를 공고하여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의 사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당해 연도 12월 초순으로 선거를 연기한다. 또한, 재선거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무산되었을 경우 학교 당국과 협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책을수립한다. (개정 2023.6.12.)

- 1. 투표율 미달로 인한 연장선거 이후에도 또다시 투표율이 기준 미달인 경우 (개정 2023.6.12.)
- 2.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로 결정되었을 때
- 3.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고를 당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되었을 때)

제74조(선거기간 연장) 투표율 기준(총학생회장단 35% 이상, 총대의원회의장단 50% 이상, 총동아리연합회 50% 이상)에 못 미치는 경우 선거 당일까지의 투표지를 보존하고, 선거기간을 자동 1일 연장한다. (단, 선거 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3.6.12.) 제75조(재선거 후보자 등록 및 선거) 재선거의 후보자 등록 및 선거에 따른 제반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장 보궐선거

제76조(보궐선거) 74조 3항에 의거 회장단 궐위 등으로 인하여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총동아리연합회 회(의)장단이 공석일 때 그 잔임 기간이 150일이 넘을 경우에 보궐선거를 1회에 한하여 실시한다.(단, 해당 연도에 재선거 및 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 할 수 없다.)

- 1. 궐위일시부터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임 기간이 150일 이내에는 부회 (의)장이 권한을 집행한다.
- 2. 또한, 회(의)장단이 궐위 시는 서열 순으로 업무를 대행한다.(학생회 : 기획국, 사무국, 정책국, 홍보국 순, 총대의원회 : 실무국, 감사국, 예결산국, 사무국 순)
- 3. 보궐선거에서 출마자가 없거나 당선자가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업무를 대행한다.

제 15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77조(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제7조에 규정된 기구의 제반 선거를 관리하는 최고의 선거관리기구이다.

제78조(구성)

- 1. 선관위는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총동아리연합회 및 학생처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으로 10 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1학년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선관위위원장은 선관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의결로 호선으로 선출한다.(초기 회의 소집은 총대의원회 의장이 소집을 명한다.)
- 2. 선관위 위원장은 선거 관련 집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율적인 집행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 3. 선관위 구성은 한라대학교 학사일정에 명시된 학생회 선거일 30일 전에 구성을 완료하여야 한다.
-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학생회비 지출 방식은 학생회비 운영세칙에 따른다. (신설 2023.6.12.)
-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총학생회 혹은 총동아리연합회 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은 총대의원회 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신설 2023.6.12.)

제79조(권한)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 1. 제7조에 규정된 기구를 대상으로 선거 시행 대상 및 피선거권자(입후보자)의 자격 요건, 선거 방법, 선거의 주요 일정을 학교당국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 2.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한다.
- 3.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며, 선거공보를 부착한다.
- 4. 선거운동의 방법과 일시를 조정한다.(단, 선거에 관련된 시행 사항은 본회의 시행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선거시행세칙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 5. 선거 및 당선의 무효여부 심사 및 당선인의 당선공고, 당선확정 공고를 한다.
- 6. 선거중단 및 연기, 재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 7. 선관위는 피선거권이 없다.
- 8. 기타 선거업무에 관련한 제반 권한을 결정한다.

제80조(위원장) 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며, 선관위의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제81조(의결)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당선의 무효 및 입후보자 자격박탈에 관한 결정은 재적인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2조(선관위 해체) 선관위는 당선 공고 후 24시간 이내에 선거에 관한 제소가 없는 경우 당 선확정 공고 후 자동적으로 해체된다.

제 16장 회칙개정

제83조(회칙개정의 발의) 본회의 회칙개정의 발의는 총대의원회 1/3이상의 발의 또는 총학생회에서 발의에 의한다.

제84조(의결) 본회의 회칙개정은 발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총대의원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85조(공포) 총대의원회에서 의결을 통과한 개정회칙은 학생생활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총학생회장이 공포한다.(단, 총학생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않을 경우 총대의원회 의장이 이를 대행하여 공포한다.)

부 칙

- 1. (시행일) 본 회칙은 1998년 4월 11일부로 시행한다.
- 2. (시행일) 본 회칙은 2000년 4월 16일부로 시행한다.
- 3. (시행일) 본 회칙은 200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 본 회칙은 2011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5. (시행일) 본 회칙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6. (시행일) 본 회칙은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 7. (시행일) 본 회칙은 2016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8. (시행일) 본 회칙은 201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9. (시행일) 본 회칙은 2018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10.(시행일) 본 회칙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11.(시행일) 본 회칙은 202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